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환경과-4003
등록일자	2015.1.29.
결재일자	2015.1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대기관리팀장	환경과장	도시환경국장		
정지현	김신희	이춘수	전결 01/29 배경섭		
협조자					

-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-
건축물석면조사 완료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



2015. 1.

강 남 구
(환 경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, 제22조, 제30조 •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(환경부고시 제2014-191호) • 2015년 강남환경 종합계획(환경과-44324, 2014.12.15)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2015년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이 완료되고, 석면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석면해체 철거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민
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 ○] [신규 :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○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해당없음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없음

-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-

건축물석면조사 완료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계획

2012.4.29 『석면안전관리법』이 시행되고 2015.04.28 2차 조사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 해체제거시 철저한 관리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함.

I

추진배경

- 『석면안전관리법』 2012.4.2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
- 2015.4.28. 2차 강남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기한 만료
- 선진인류도시 강남을 위한 2015년 강남환경 종합계획'(환경과-44324, 2014.12.15)

II

추진방향

- 조사기한내 석면조사 완료
-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
- 석면해체작업시 비산 없는 철저한 관리

III

강남구 현황

- 건축물석면조사 현황 (2015.1.28.기준)

구분	합 계			공공건축물		학교 등		다중이용시설		기타 건축물	
	총계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
대상	733	580	153	175	0	13	1	338	125	54	27
제출	662 (91%)	580 (100%)	82 (54%)	175	0	13	1	338	70	54	11
미제출	71	0	71	0	0	0	0	0	55	0	16

건축물석면조사 완료

 건축물석면조사 완료

- 2015년 4월 29일 기한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(2~3월) : 석면조사 보고서 미제출 건축물 71개소(2015.1.28기준)
- 2015년 석면조사 대상 신규 건축물 현황 파악(2월) : 소유권이전이나, 용도변경 등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 해당 담당과에 자료 협조요청

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

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안내 및 수료 확인(2개월에 1회)

⇒ 안내공문 발송 및 수료증 제출

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관리 여부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(6개월에 1회)

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의 철저한 관리

 석면건축물 해체·제거 작업시 500㎡ 이상 건축물 현장 점검

-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일정 올바로시스템에서 매일 확인
- 안내판 설치, 보양작업 수행, 비산농도측정 적정 여부, 감리인 상주여부(800㎡이상)등 확인
 - ※ 2014년 지도점검 : 석면건축물 5개소, 석면해체·제거사업장 10개소 지도점검

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(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의뢰)

-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 합이 5000㎡이상,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, 재정비촉진사업

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협조요청

-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이 아닌 관내 어린이집(430㎡이하) 현황 파악하여 석면 조사 및 석면해체·제거 협조 공문 발송 (3월 ~ 5월)
- 공공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에 석면철거 협조 공문 발송(3월 ~ 5월)
 - ⇒ 특수법인, 공사 등 포함하여 석면건축물 71개소

▣ 지하철역 석면 조기제거 협조요청

○ 석면이 포함된 지하철 석면 조기 해체·제거 협조요청(2월)

⇒ 관내 지하철 30개소 중 석면이 남아있는 지하철은 총 3개소임(2호선 선릉역, 삼성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)

※ 2014년 확인시 선릉역과 삼성역은 2015년 석면해체·제거계획이 잡혀있고, 대모산입구역은 미정

▣ 관내 학교 중 석면건축물 현황파악 및 철저한 석면관리 협조 요청(1월 ~ 3월)

V 행정사항

▣ 소요예산

○ 예산과목 : 환경과,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,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, 황사·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개선 추진, 일반운영비, 공공운영비

○ 산출근거 : 안내 우편료

- 1,950원 × 300부 × 1회 = 585천원.

붙임 1. 석면조사,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해체·제거 감독 개요

2. 석면조사 세부 현황. 끝.

<붙임1>

석면조사,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해체·제거 감독 개요

□ 석면조사 개요

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(『석면안전관리법』 제21조)

- 정부·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㎡이상인 건축물
- 유치원,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
-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500㎡ 이상

※ 2009년1월1일 이후 착공신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

■ 조사기한 : 시행일부터 3년 이내 (『석면안전관리법』 시행규칙 부칙 제3조)

- 2년 이내 : 정부·공공기관 건축물, 1999.12.31일 이전 건축신고한 건축물 ☞ 완료
- 3년 이내 : 2년 이내 외의 건축물

※ 사용승인서를 2012년 4월29일 이후에 받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이행

□ 석면건축물 관리개요

■ 석면건축물 :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면적이 50㎡이상인 건축물

- 석면건축물일 경우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동시에 6개월에 1회 관리대장 작성
-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: 지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수료

□ 석면해체·제거 감독

■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해체·제거 작업

-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면적이 50㎡이상인 사업장(주택인 경우 200㎡이상)은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
- 『석면안전관리법』 제28조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면적이 500㎡이상인 사업장은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하여 지자체에 제출
- 『석면안전관리법』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(환경부고시 제 2014-191호)에 의거 석면해체 면적이 800㎡이상인 사업장은 지자체에 감리인 지정신고

<붙임2>

석면조사 세부 현황

(2015.1.28.기준)

구분	공공건축물				학교		다중이용시설		기타 건축물					
	행정 기관	공공 기관	특수 법인	지방 공공 공단	대학교 등		다중이용시설		문화 및 집회시설		의료시설		노유자시설	
기한	2년 이내			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	2년 이내	3년 이내
대상	73	77	7	18	13	1	338	125	34	15	8	10	12	2
제출	73	77	7	18	13	1	338	70	34	7	8	2	12	2
미제출	0	0	0	0	0	0	0	55	0	8	0	8	0	0